

"서울문화재단은 문화예술을 통해 삶의 질을 높이고 서울의 도시경쟁력을 키우고자 서울시에서 설립한 기관입니다"

문서번호	감사팀-701
보존기간	운영구
결재일자	2015.12.14.
공개여부	공개
방침번호	대표이사 방침 제(472)호

★팀장	실장	대표이사
합 조	경영기획본부장 창작지원본부장 팀장 차장	

**「서울문화재단 정보공개 운영내규」 개정  
및 정보공개심의 위원 구성**

## 「서울문화재단 정보공개 운영내규」 개정 및 정보공개심의 위원 구성

『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』에 의거하여 시행하고 있는 『서울문화재단 정보공개 운영내규』를 일부 개정하고, 2015년 임기가 만료되는 정보공개심의회 외부위원을 신규 위촉하여 심의회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자 함

### I 정보공개 운영내규

- 연혁: 2011. 10. 28.일 제정 이후 3차례 개정
- 구성: 내규 조항(제1~16조) 및 <별표 제1~2호, 별지 제1~11호>
- 목적: 서울문화재단의 정보공개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

### II 관련 법률 및 근거

- 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」 및 동법 시행령
- 「서울특별시 열린시정을 위한 행정정보공개 조례」 및 조례시행규칙

### III 주요 개정 내용

- 정보공개심의회 내부위원 변경

현 행	개 정 안
<b>제3장 정보공개심의회</b>	<b>제3장 정보공개심의회</b>
<b>제9조(구성)</b> ①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내부위원 2명, 외부위원 2명으로 구성한다. ②위원장은 감사실장이 담당하며, 위원장을 제외한 내부위원은 경영기획본부장, <b>문화사업본부장</b> 으로 하고, 외부위원은 서울문화재단의 업무 또는 정보 공개의 업무에 관한 지식을 가진 자로 위촉한다. ③심의회 외부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, 1차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.	<b>제9조(구성)</b> ① <현행과 같음> ②위원장은 감사실장이 담당하며, 위원장을 제외한 내부위원은 경영기획본부장, <b>창작지원본부장</b> 으로 하고, 외부위원은 서울문화재단의 업무 또는 정보 공개의 업무에 관한 지식을 가진 자로 위촉한다. ③ <현행과 같음>

※ 2015. 6. 15.일자 조직개편에 따라 기존 본부 명칭 및 선임본부 순위 변경

## IV 정보공개심의회 구성

- 정보공개심의회 구성 근거
  - 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」 제12조(정보공개심의회)
  - 「서울문화재단 정보공개 운영내규」 제3장 정보공개심의회
- 정보공개심의회 구성: 5명

구 분	위촉 기준	인 원	비 고
위원장	감사실장	1	정보공개 운영내규 제9조 제2항
내부위원	경영기획본부장 창작지원본부장	2	
외부위원	재단의 업무 또는 정보공개 업무에 관한 지식을 가진 자	2	외부위원 의무위촉 사항

- 정보공개심의회 외부위원 위촉
  - 임 기: 2년(1회에 한해 연임 가능)
  - 외부위원 인적사항

구 분	현소속	주요 경력	비고
문건영	법무법인(유) 한결	-서울특별시 정보공개심의회 위원 -(사)문화우리 감사	재단 고문변호사
김상수	회계법인 길인	-회계법인 이촌 -한미회계법인	재단 고문회계사

- 외부위원 위촉기간: 2015. 12. 17.~2017. 12. 16.
- 위촉사유: 기존 정보공개심의회 외부위원(홍승기 변호사, 조운호 회계사)의 임기(2013. 12. 16.~2015. 12. 16.) 종료에 따라 정보공개제도 및 재단 업무에 관한 지식을 보유한 현재 재단 고문변호사 및 고문회계사를 신규 위촉

## V 후속 조치사항

- 2015. 12. 17.일: 해당 내규 시행(기존 외부위원 임기 종료일 다음 날)
- 2015. 12월: 개정된 내용은 차기 이사회에 보고

붙임: 서울문화재단 정보공개 운영내규(안) 1부 및 위촉장 각 1부. 끝.